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교보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1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1호(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1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교보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의 본•지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년 9월 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0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 Tomorrow 장기우량 증권 투자신탁 K-1호(채권)	599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59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59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926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52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926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87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A1038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A84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AH87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AW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W808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AW8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B83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BH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5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U0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BU0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5579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 09. 04)

교보 Tomorrow 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 K-1 호(채권) (59920)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교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납입금액의 0.3% 이내	0.3195	0.20	**0.28**	0.3195	63	97	133	210	4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1)	없음	0.4195	0.30	**0.38**	0.4414	45	93	143	250	56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0.2195	0.10	**0.22**	0.2413	40	66	93	151	3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2695	0.15	**0.24**	0.2911	30	61	94	165	375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종류 A2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총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5/09/05 ~ 2026/09/04	2024/09/05 ~ 2026/09/04	2023/09/05 ~ 2026/09/04	2021/09/05 ~ 2026/09/04	(%)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	2006-09-05	-5.53	-0.47	2.57	1.13	3.32
비교지수	2006-09-05	-4.82	-0.41	2.16	0.66	3.13
수익률 변동성(%)	2006-09-05	3.85	3.35	3.38	3.81	2.75
ClassA2	2014-10-21	-5.83	-0.79	2.24	0.81	1.67
비교지수	2014-10-21	-4.82	-0.41	2.16	0.66	1.65
수익률 변동성(%)	2014-10-21	3.85	3.35	3.38	3.81	2.72
ClassC1	2006-09-05	-5.93	-0.89	2.14	0.71	2.98
비교지수	2006-09-05	-4.82	-0.41	2.16	0.66	3.13
수익률 변동성(%)	2006-09-05	3.85	3.35	3.38	3.81	2.75
ClassAe	2016-09-13	-5.74	-0.70	2.35	0.91	6.40
비교지수	2016-09-13	-4.82	-0.41	2.16	0.66	1.13
수익률 변동성(%)	2016-09-13	3.85	3.35	3.38	3.81	2.91
ClassCE	2014-10-29	-5.78	-0.75	2.29	0.86	1.71
비교지수	2014-10-29	-4.82	-0.41	2.16	0.66	1.63
수익률 변동성(%)	2014-10-29	3.85	3.35	3.38	3.81	2.72

주1) 비교지수 : (KOBI Market Index.(KIS) X 90% + MMI_CALL X 10%) (2016년 8월 10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BI Market Index * 100%로 작성되었으며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상기외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운용성과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6.09.04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권용범	1969	본부장	21개	24,055억원	-4.96	-0.18	-2.49	1.11	32년6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리서치 경력 포함)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table>
<tr><td></td><td>의미합니다.</td></tr>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 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금리변동위험</td><td>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용위험</td><td>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매입 방법</td><td>• 오후 5시(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오후 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td><td>환매 방법</td><td>• 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금액 지급
• 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d colspan="2"></td></tr>
</table>

<table>
<tr><td>기준가</td><td>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교보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 02-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1월 10일</td><td>존속 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약 2년 10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약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약 2년 10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td></tr>
</table>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yobo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yobo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투자신탁의 개요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 임] 용 어 풀 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투자신탁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 Tomorrow 장기우량 증권 투자신탁 K-1호(채권)	599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59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59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926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52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926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87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A1038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A84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AH87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AW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W808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AW8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B83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BH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5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U0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BU0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557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 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교보 Tomorrow 장기우량 증권 투자신탁 K-1호(채권)	599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59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59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926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52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926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87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A1038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A84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AH87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AW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W808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AW8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B83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BH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5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BU0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BU06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557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06.09.05	최초설정
2014.01.08	Class C-P2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11.05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2019.11.01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수익률 변동성 변경
2020.09.18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1.41%' →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1.63%')
2021.01.28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아이타스 → 하나펀드서비스)
2021.11.02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1.63'%' ->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1.6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연금계좌 과세 개정사항 반영
2021.11.12	회계연도 기준 결산기 재무제표항목 일부 변경 반영
2022.09.30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1.68'%' ->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2.59%')
2023.08.24	- Class AG 신설
2023.10.26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2.59'%' -> 실제 수익률 변동성 '5등급' '3.64%')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제도 과세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08.30	- 펀드슈퍼마켓 투자자 전용 종류형 펀드 클래스 개정사항 반영 (보수율변경) - 집합투자증권 문구 정의 명확화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10.04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5등급' 3.64%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5등급' 7.64%)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5.06.11	종류 C1 가입자격 변경(3억미만 → 제한없음)
2025.07.11	투자설명서 상 표기 명확화 및 오기 정정
2025.11.07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변경 반영 (7.64% → 7.25%, 5 등급 유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6.10.08	-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사명 및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
2026.11.10	-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변경 반영 (7.25% → 7.06%, 5 등급 유지)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채권평가회사 추가(이지자산평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대표전화 : ☎ 02-767-9600 홈페이지 : www.kyoboam.com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2026.09.04 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단위:%)				운용 경력 년수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권용범	1969	본부장	21개	24,055 억원	-4.96	-0.18	-2.49	1.11	32년 6개월	-하나대투증권 채권운용부, 자산운용팀 -하나UBS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동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유진투자증권 채권운용2팀 -동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팀장 -(현)교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리서치 경력 포함)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6)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 현 중	2006.09.05 ~ 2009.03.31
이 성 균	2009.04.01 ~ 2010.02.26
조 영 삼	2010.02.27 ~ 2010.08.22
차 상 용	2010.08.23 ~ 2015.01.04
권 용 범	2015.01.05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신탁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최초 납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가입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최초 납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의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됨 -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익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수익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신탁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2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2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3개월(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2년 10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

		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변액보험 포함)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및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회사채 등 채권"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 이득와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이하 "단기사채등")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④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⑤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관련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⑥	증권의 대여[주3)]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기준
⑦	환매조건부매수	10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
⑧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
⑨	증권의 차입[주4)]	20%이하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⑩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⑪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⑫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⑬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⑭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취득	집합투자업자는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주2)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주3)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제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채, 통안채, 공사채, 은행채, 우량회사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자본 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듀레이션 전략	- 분기별/월별/주간 단위별 듀레이션 변동을 통해 자본이득 추구 - 자본이득에 의한 수익률향상 보다는 만기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운용
포트폴리오 전략	- 채권 종목별 스프레드 전략 : 채권별 스프레드 통계 분석에 의한 종목교체 - 채권 및 파생상품 평가에 따른 매매 전략 : 파생상품의 평가를 통해 포트폴리

	오 구성에 반영 - 신용스프레드 매매 전략 : 등급별 종목별 스프레드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 - 저평가 종목 발굴, 차익거래 기회 포착 등으로 수익획득

나.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BI Market * 90% + CALL*10%]입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BI Market

KOBI Market은 KIS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채권지수로, 40개의 유동적인 종목으로 국내 채권시장을 tracking하도록 설계되었다. 종합채권지수의 듀레이션을 타겟으로 하며, 섹터/만기별 비중이 국내 시장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주1) KOBI Market은 KIS채권평가의 웹사이트(www.bon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

① 목표듀레이션의 유지

- 목표듀레이션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적정한 시장위험 외에 추가적인 변동 위험을 회피

② 우량채권에 분산 투자

-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 및 공사채 은행채에 투자하며 회사채의 경우 A-이상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및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함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국채,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때에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한 손실위험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위험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

	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위험

투자위험 등급 : 5등급 (낮은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환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실적배당상품으로 낮은 수준의 위험등급인 경우에도 시장이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Class C4<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VaR')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7.06%**으로,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 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시장위험 기준에 의한 것이며, 투자전략, 환율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및 파생상품 위험, 환변동성 노출여부 및 시장상황, 실제 상품특성에 따라 최종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제외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최초 납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가입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최초 납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가(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의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됨 -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한 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익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수익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종류(Class)별로 가입자격 및 수수료, 보수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가입자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Class를 다수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3) Class C4<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상품 주요 내용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가.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투자자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
계약기간	7년 이상 (당해 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혜택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7년 이상 가입시)
감면세액 추징	-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투자자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
계약기간	7년 이상 (당해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table>
<tr><td>혜택</td><td>①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7년 이상 가입시)
② 소득공제 : 당해 저축 불입액의 40%
–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12조
– 한도 :
ⅰ) 아래 표 1과 2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ⅱ) 아래 표 1과 2 및 3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임
<table>
<tr><th>구분</th><th>소득공제비율</th><th>내용</th></tr>
<tr><td>1.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공제</td><td>저축불입액의 40%</td><td>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2)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조특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td></tr>
<tr><td>2. 주택임차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td><td>원리금상환액의 40%</td><td></td></tr>
<tr><td>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td><td>이자상환액</td><td></td></tr>
</table>
*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td></tr>
<tr><td>감면세액 추징</td><td>-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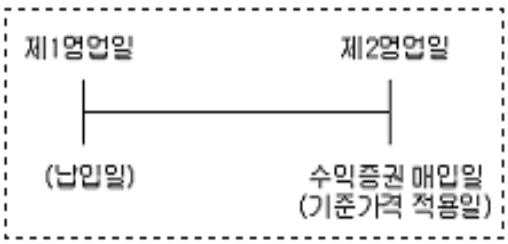
※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r>
<tr><td>소득공제 추징</td><td>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추징합니다.
- 1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추징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td></tr>
</table>

<table>
<tr><td></td><td>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당해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r>
<tr><td>감면받은 세액 추징관련 예시</td><td>- 매월 50만원을 적립한 경우
<table>
<tr><th>해지일(저축가입일로부터)</th><th>배당소득세</th><th>소득공제</th><th>내용</th></tr>
<tr><td>10개월</td><td>추징</td><td>40만원 추징</td><td>소득공제추징세액 : 1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td></tr>
<tr><td>3년</td><td>추징</td><td>72만원 추징</td><td>소득공제추징세액 : 5년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td></tr>
<tr><td>6년</td><td>추징</td><td>추징하지않음</td><td>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배당 소득감면세액만 추징함</td></tr>
<tr><td>8년</td><td>추징하지않음</td><td>추징하지않음</td><td>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td></tr>
</table>
*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td></tr>
</table>

(4)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5시(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5시(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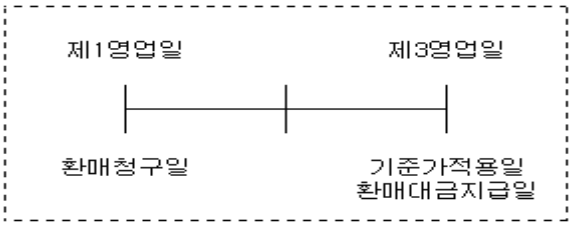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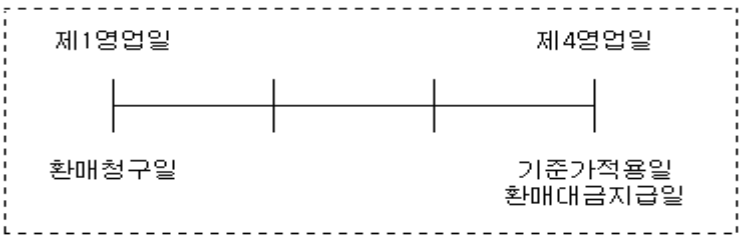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오후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3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오후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⑤'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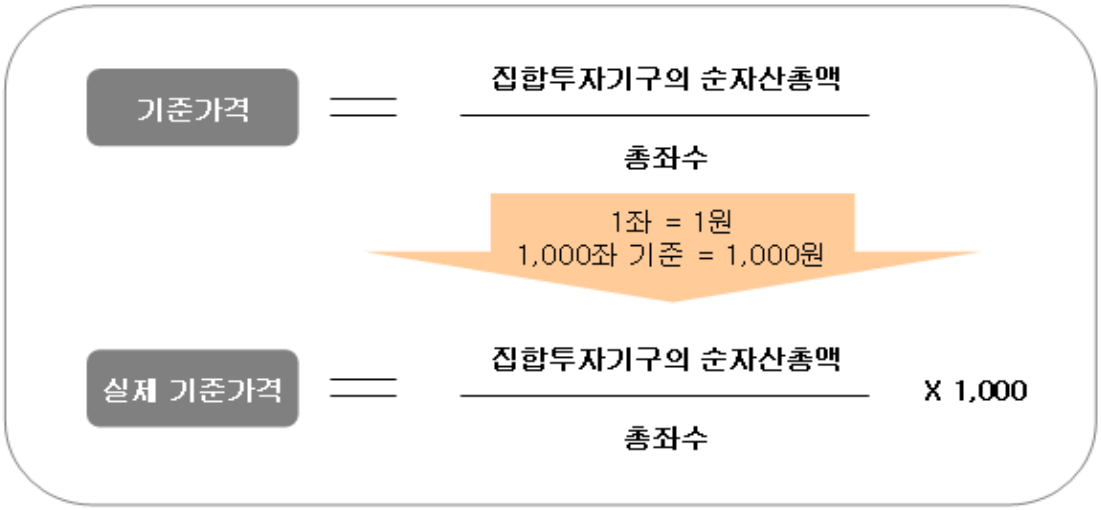
(8)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자세한 정보는 상단 (3) 환매수수료 또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O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kyoboam.com), 판매회사 엽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①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①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⑧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⑨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납입금액의 0.02%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납입금액의 0.1%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납입금액의 0.3%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15%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21%이내	없음	없음	없음

주1) Class A, A-i, A2 및 Ae, 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종류(Class)별로 가입자격 및 수수료, 보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가입자격 및 보수 등이 상이한 Class를 다수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3) Class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0.10	0.00	0.0095	0.01	0.1195	0.012	0.131		0.1426	0.0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0.10	0.30	0.0095	0.01	0.4195	0.011	0.4305	**0.38**	0.4414	0.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0.10	0.20	0.0095	0.01	0.3195	0.012	0.331		0.3426	0.0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10	0.00	0.0095	0.01	0.1195	0.012	0.1311		0.1427	0.0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0.10	0.20	0.0095	0.01	0.3195		0.3195		0.319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10	0.05	0.0095	0.01	0.1695	0.011	0.1807		0.1919	0.0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0.10	0.20	0.0095	0.01	0.3195	0.011	0.331		0.3424	0.019
수수료선취-오프라	0.10	0.03	0.0095	0.01	0.1495	0.00	0.1495		0.1495	0.000

인-고액(A-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0.10	0.25	0.0095	0.01	0.3695	0.012	0.3815		0.3934	0.0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0.10	0.20	0.0095	0.01	0.3195		0.3195	**0.28**	0.319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10	0.15	0.0095	0.01	0.2695	0.011	0.2803	**0.24**	0.2911	0.018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0.10	0.09	0.0095	0.01	0.2095	0.011	0.2207		0.2319	0.0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0.10	0.08	0.0095	0.01	0.1995	0.012	0.2112		0.223	0.019
수수료선취-온라인(Ae)	0.10	0.10	0.0095	0.01	0.2195	0.011	0.2304	**0.22**	0.2413	0.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10	0.21	0.0095	0.01	0.3295		0.3295		0.329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0.10	0.10	0.0095	0.01	0.2195	0.011	0.2308		0.2421	0.0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0.10	0.12	0.0095	0.01	0.2395	0.011	0.2509		0.2623	0.01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10	0.14	0.0095	0.01	0.2595		0.2595		0.2595	-
지급시기	매6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시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9.05~2026.09.04]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타비용예시: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증권 거래비용	224,066,357
금융비용	13,113,651,861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9.05~2026.09.04]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익증권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예시: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REPO지급이자, 차입금지급이자, 대여금이자비용, 차입채권지급이자 등 각종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 투자비율에 따라 모펀드의 매매수수료 및 금융비용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은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또는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	30	44	76	17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	32	48	83	1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90	139	244	5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5	93	143	250	5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70	107	187	4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5	72	111	194	4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	28	42	74	1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	30	46	81	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4(장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	67	103	181	4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3	67	103	181	4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	38	58	102	2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	40	62	109	2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70	107	187	4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5	72	111	194	441
수수료선취-오프라인-고액(A-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41	58	95	20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	41	58	95	2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9	80	123	216	4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0	83	127	223	50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	97	133	210	4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3	97	133	210	4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	59	91	159	3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0	61	94	165	375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	46	71	125	2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	49	75	131	2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	44	68	120	2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	47	72	126	287
수수료선취-온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9	63	89	145	312

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0	66	93	151	3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69	106	187	4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4	69	106	187	4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	48	75	131	2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	51	78	137	3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	53	81	142	3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7	55	85	149	33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75	105	168	3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7	75	105	168	35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종류 A2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0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 년 4 월 1 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Class C4<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이익분배금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①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Class C4<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

- 투자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등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0%	가입불가	가입불가
주민세	0%	가입불가	가입불가
계	0%	가입불가	가입불가

- 다만,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세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합니다.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14.0%	가입불가	가입불가
주민세	1.4%	가입불가	가입불가
계	15.4%	가입불가	가입불가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만원 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8기(2023.09.05 ~ 2024.09.04)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19기(2024.09.05 ~ 2025.09.04)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20기(2025.09.05 ~ 2026.09.04)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6.09.04	2025.09.04	2024.09.04
운용자산	740,972,619,358	2,043,129,864,111	1,285,404,010,210
유가증권	662,589,858,556	1,770,035,204,068	1,208,038,519,47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8,959,085,620	112,735,562,482	77,365,490,732
기타 운용자산	19,423,675,182	160,359,097,561	0
기타자산	26,799,418,368	23,487,027,226	27,468,219,260
자산총계	767,772,037,726	2,066,616,891,337	1,312,872,229,470
운용부채	243,019,772,873	401,827,850,784	191,218,334,245
기타부채	84,284,287	56,239,812,939	76,854,917,471
부채총계	243,104,057,160	458,067,663,723	268,073,251,716
원본	547,266,214,692	1,585,122,177,418	1,043,058,510,36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22,598,234,126	23,427,050,196	1,740,467,394
자본총계	524,667,980,566	1,608,549,227,614	1,044,798,977,754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6.09.04	2025.09.04	2024.09.04
운용수익	-58,339,592,419	71,642,279,430	89,560,078,934
이자수익	49,459,042,368	57,987,531,070	38,799,857,707
배당수익	670,800,000	143,139,597	2,057,135,919
매매평가차손익	-108,532,065,130	13,483,734,355	48,679,376,404
기타수익	62,630,343	27,874,408	23,708,904

운용비용	13,389,697,458	13,180,900,279	12,518,017,301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171,358,357	148,456,610	115,519,368
기타비용	13,218,339,101	13,032,443,669	12,402,497,933
당기순이익	-71,729,289,877	58,461,379,151	77,042,061,633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0기 62,630,343원 19기 27,874,408원 18기 23,708,904원)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20기 0원 19기 0원 18기 0원)

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6.09.04	2025.09.04	2024.09.04
운용자산	740,972,619,358	2,043,129,864,111	1,285,404,010,210
현금및예치금	58,959,085,620	112,735,562,482	77,365,490,732
현금및현금성자산	58,893,593,183	112,670,517,994	77,300,890,943
정기예금	0	0	0
증거금	65,492,437	65,044,488	64,599,789
기타예금	0	0	0
대출채권	19,423,675,182	160,359,097,561	0
콜론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매입어음	19,423,675,182	160,359,097,561	0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662,589,858,556	1,770,035,204,068	1,208,038,519,478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599,995,144,709	1,747,241,163,459	1,205,904,005,333
수익증권	62,594,713,847	22,794,040,609	2,134,514,145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건물	0	0	0
토지	0	0	0
건설중인자산	0	0	0

농산물	0	0	0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6,799,418,368	23,487,027,226	27,468,219,26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9,786,000,000	0	0
정산미수금	0	0	71,200,000
미수이자	8,009,950,465	15,379,593,178	12,460,179,629
미수배당금	0	0	0
선급비용	9,001,814,118	8,104,103,298	14,936,839,631
선납세	0	0	0
외화환산손익조정	0	0	0
기타미수입금	1,653,785	3,330,750	0
자 산 총 계	767,772,037,726	2,066,616,891,337	1,312,872,229,470
운용부채	243,019,772,873	401,827,850,784	191,218,334,245
옵션매도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243,019,772,873	401,827,850,784	191,218,334,245
기타부채	84,284,287	56,239,812,939	76,854,917,47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정산미지급금	61,500,000	34,500,000	0
해지미지급금	0	0	0
미지급운용수수료	0	0	0
미지급판매수수료	0	0	0
미지급수탁수수료	0	0	0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0	0	0
수수료미지급금	21,384,287	32,484,497	22,807,338
차입금	0	0	0
기타미지급금	1,400,00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0	56,172,828,442	76,832,110,133
부 채 총 계	243,104,057,160	458,067,663,723	268,073,251,716
원 본	547,266,214,692	1,585,122,177,418	1,043,058,510,360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22,598,234,126	23,427,050,196	1,740,467,394
자 본 총 계	524,667,980,566	1,608,549,227,614	1,044,798,977,754
부채 및 자본 총계	767,772,037,726	2,066,616,891,337	1,312,872,229,470
총좌수	547,266,214,692	1,585,122,177,418	1,043,058,510,360
기준가격	958.71	1014.78	1001.67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0 기 2025.09.05 ~ 2026.09.04	제 19 기 2024.09.05 ~ 2025.09.04	제 18 기 2023.09.05 ~ 2024.09.04
운용수익(운용손실)	-58,339,592,419	71,642,279,430	89,560,078,934
투자수익	50,192,472,711	58,158,545,075	40,880,702,530
이자수익	49,459,042,368	57,987,531,070	38,799,857,707
배당금수익	670,800,000	143,139,597	2,057,135,919
수수료수익	62,630,343	27,874,408	23,708,904
임대료수익	0	0	0
기타투자수익	0	0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2,146,433,913	31,790,947,773	59,302,531,409
지분증권매매차익	0	0	0
채무증권매매차익	2,550,758,144	10,858,825,262	15,704,939,906
파생상품매매차익	9,514,160,000	6,646,010,000	9,962,460,000
외환거래매매차익	0	0	0
지분증권평가차익	1	557,000,000	85,189,646
채무증권평가차익	81,515,768	13,729,112,511	33,549,941,857
파생상품평가차익	0	0	0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0,678,499,043	18,307,213,418	10,623,155,005
지분증권매매차손	0	0	35,812,011
채무증권매매차손	54,506,155,121	6,769,163,398	1,962,592,507
파생상품매매차손	12,114,098,000	6,528,590,000	8,583,680,000
외환거래매매차손	0	0	0
지분증권평가차손	2,199,326,763	40,613,133	0
채무증권평가차손	51,858,919,159	4,968,846,887	41,070,487
파생상품평가차손	0	0	0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기타손실	0	0	0
기타운용수익	0	0	0
운용비용	13,389,697,458	13,180,900,279	12,518,017,301
운용수수료	0	0	0
판매수수료	0	0	0
수탁수수료	0	0	0
사무수탁수수료	0	0	0
매매수수료	171,358,357	148,456,610	115,519,368

이자비용	13,113,651,861	12,918,290,379	12,323,744,693
임대자산관련비용	0	0	0
기타운용비용	104,687,240	114,153,290	78,753,24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1,729,289,877	58,461,379,151	77,042,061,633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60.19	43.12	87.21

라.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단위: 원]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 이외의 증권	2,503,525,377,835	-	-	1,586,998,515,555	-	-
장내파생	1,076,075,380,000	18,780,000	0.00	681,269,820,000	12,660,000	0.00
장외파생	-	-	-	-	-	-
부동산	-	-	-	-	-	-
기타(레포,대차,콜 등)	214,435,308,773,840	148,456,610	0.00	169,358,118,431,188	115,519,368	0.00
합 계	218,014,909,531,675	167,236,610	0.00	171,626,386,766,743	128,179,368	0.00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마.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68

주 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운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804,019	793,535	381,132	398,899	142,093	147,846	1,043,059	1,121,631
2024/09/05~2025/09/04	1,043,059	1,044,799	1,146,981	1,188,433	681,622	703,803	1,585,122	1,664,722
2025/09/05~2026/09/04	1,585,122	1,608,549	557,283	547,208	1,650,494	1,615,532	547,266	524,668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종류형펀드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A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555,191	561,996	51,612	54,655	16,866	17,966	589,937	649,859
2024/09/05~2025/09/04	589,937	607,516	120,882	129,057	98,665	103,975	653,270	704,492
2025/09/05~2026/09/04	653,270	681,552	292,476	290,113	752,017	746,633	215,705	212,347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1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26,040	26,413	39,711	43,101	20,636	21,988	45,115	49,654
2024/09/05~2025/09/04	45,115	46,832	190,236	203,990	113,406	121,884	124,497	134,933
2025/09/05~2026/09/04	124,497	130,934	11,901	12,455	107,326	110,295	32,681	32,333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2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0	0	5,000	5,000	5,000	5,019	0	0
2024/09/05~2025/09/04	0	0	36,876	38,180	3,003	3,109	33,873	35,303
2025/09/05~2026/09/04	33,873	34,211	5,928	6,000	24,709	24,219	16,174	15,382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F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36,502	36,547	60,173	63,800	4,896	5,326	91,780	99,952
2024/09/05~2025/09/04	91,780	93,280	97,737	102,855	36,785	38,914	159,297	169,459
2025/09/05~2026/09/04	159,297	164,024	15,191	15,721	112,071	111,888	67,695	65,738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P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3,612	3,554	5,253	5,392	663	680	8,202	8,765
2024/09/05~2025/09/04	8,202	8,242	12,979	13,483	2,899	3,010	18,802	19,748
2025/09/05~2026/09/04	18,802	19,143	1,950	1,943	13,105	12,945	8,241	7,901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W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54,282	54,793	7,960	8,401	23,501	25,021	38,741	42,557
2024/09/05~2025/09/04	38,741	39,784	43,417	46,389	14,247	15,207	70,584	75,906
2025/09/05~2026/09/04	70,584	73,434	94,629	95,880	124,621	124,454	42,967	42,18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Ai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50,000	49,487	0	0	0	0	50,000	53,838
2024/09/05~2025/09/04	50,000	50,349	0	0	50,000	51,200	0	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A2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5,135	5,230	23,069	25,272	4,422	4,759	23,783	26,304
2024/09/05~2025/09/04	23,783	24,737	107,328	115,699	35,044	37,821	97,535	106,027
2025/09/05~2026/09/04	97,535	102,781	12,250	12,882	91,979	94,482	20,769	20,609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9,232	9,292	40,658	43,756	14,282	15,154	35,608	38,943
2024/09/05~2025/09/04	35,608	36,569	180,475	192,209	105,148	112,156	113,136	121,491
2025/09/05~2026/09/04	113,136	117,713	16,616	17,106	107,643	109,644	25,444	24,942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S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830	837	608	653	545	579	893	980
2024/09/05~2025/09/04	893	918	1,607	1,701	1,085	1,150	1,467	1,579
2025/09/05~2026/09/04	1,467	1,529	112	113	1,104	1,119	519	509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S-P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1,806	1,806	852	894	870	905	1,788	1,944
2024/09/05~2025/09/04	1,788	1,822	670	701	924	970	1,654	1,764
2025/09/05~2026/09/04	1,654	1,708	207	209	901	898	1,015	988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A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2,400	2,385	13,268	14,125	3,192	3,359	12,476	13,479
2024/09/05~2025/09/04	12,476	12,639	37,300	39,114	18,751	19,675	31,818	33,722
2025/09/05~2026/09/04	31,818	32,657	2,526	2,554	27,637	27,708	7,681	7,431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P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25,452	25,387	109,582	115,074	34,779	36,285	100,254	108,717
2024/09/05~2025/09/04	100,254	101,935	196,634	206,459	94,377	99,318	209,182	222,507
2025/09/05~2026/09/04	209,182	215,478	33,223	33,486	169,318	170,040	79,910	77,593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P2e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8,427	8,473	16,779	17,857	7,665	8,078	17,540	19,172
2024/09/05~2025/09/04	17,540	17,986	27,466	29,037	18,602	19,741	27,556	29,555
2025/09/05~2026/09/04	27,556	28,627	5,592	5,701	22,291	22,601	11,750	11,50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ClassC-P2 [단위: 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9/05~2024/09/04	6,814	6,804	879	920	1,474	1,534	6,219	6,741
2024/09/05~2025/09/04	6,219	6,348	1,432	1,505	1,604	1,693	6,432	6,858
2025/09/05~2026/09/04	6,432	6,651	863	860	2,549	2,554	4,946	4,81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 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5/09/05 ~ 2026/09/04	2024/09/05 ~ 2026/09/04	2023/09/05 ~ 2026/09/04	2021/09/05 ~ 2026/09/04	(%)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	2006-09-05	-5.53	-0.47	2.57	1.13	3.32
비교지수	2006-09-05	-4.82	-0.41	2.16	0.66	3.13
수익률 변동성(%)	2006-09-05	3.85	3.35	3.38	3.81	2.75
ClassA	2006-09-05	-5.64	-0.60	2.45	1.01	3.20
비교지수	2006-09-05	-4.82	-0.41	2.16	0.66	3.13
수익률 변동성(%)	2006-09-05	3.85	3.35	3.38	3.81	2.75
ClassC1	2006-09-05	-5.93	-0.89	2.14	0.71	2.98
비교지수	2006-09-05	-4.82	-0.41	2.16	0.66	3.13
수익률 변동성(%)	2006-09-05	3.85	3.35	3.38	3.81	2.75
ClassC2	2010-04-12	-5.83	-0.93	0.87	0.30	2.31
비교지수	2010-04-12	-4.82	-0.67	0.74	-0.18	2.27
수익률 변동성(%)	2010-04-12	3.85	3.31	3.16	3.73	2.46
ClassCF	2013-04-29	-5.69	-0.65	2.40	-	0.19
비교지수	2013-04-29	-4.82	-0.41	2.16	-	0.14
수익률 변동성(%)	2013-04-29	3.85	3.35	3.38	3.50	2.89
ClassCP	2012-01-02	-5.83	-0.79	2.24	0.81	1.21
비교지수	2012-01-02	-4.82	-0.41	2.16	0.66	1.17
수익률 변동성(%)	2012-01-02	3.85	3.35	3.38	3.81	2.62
ClassCW	2011-07-14	-5.64	-0.60	2.45	1.01	2.52
비교지수	2011-07-14	-4.82	-0.41	2.16	0.66	2.35
수익률 변동성(%)	2011-07-14	3.85	3.35	3.38	3.81	2.52
ClassAi	2012-02-10	-	0.84	3.42	1.83	0.78
비교지수	2012-02-10	-	0.92	3.07	1.48	0.52
수익률 변동성(%)	2012-02-10	-	1.37	2.26	3.21	16.94
ClassA2	2014-10-21	-5.83	-0.79	2.24	0.81	1.67
비교지수	2014-10-21	-4.82	-0.41	2.16	0.66	1.65
수익률 변동성(%)	2014-10-21	3.85	3.35	3.38	3.81	2.72
ClassCE	2014-10-29	-5.78	-0.75	2.29	0.86	1.71
비교지수	2014-10-29	-4.82	-0.41	2.16	0.66	1.63
수익률 변동성(%)	2014-10-29	3.85	3.35	3.38	3.81	2.72
ClassS	2014-10-30	-5.73	-0.68	2.35	0.91	1.76
비교지수	2014-10-30	-4.82	-0.41	2.16	0.66	1.63
수익률 변동성(%)	2014-10-30	3.85	3.35	3.38	3.81	2.72
ClassS-P	2015-10-27	-5.72	-0.67	2.37	0.93	1.60
비교지수	2015-10-27	-4.82	-0.41	2.16	0.66	1.37
수익률 변동성(%)	2015-10-27	3.85	3.35	3.38	3.81	2.81
ClassAe	2016-09-13	-5.74	-0.70	2.35	0.91	6.40
비교지수	2016-09-13	-4.82	-0.41	2.16	0.66	1.13
수익률 변동성(%)	2016-09-13	3.85	3.35	3.38	3.81	2.91

ClassC-Pe	2017-08-17	-5.74	-0.70	2.35	0.91	1.67
비교지수	2017-08-17	-4.82	-0.41	2.16	0.66	1.34
수익률 변동성(%)	2017-08-17	3.85	3.35	3.38	3.81	3.01
ClassC-P2e	2017-11-20	-5.76	-0.72	2.32	0.89	1.81
비교지수	2017-11-20	-4.82	-0.41	2.16	0.66	1.44
수익률 변동성(%)	2017-11-20	3.85	3.35	3.38	3.81	3.13
ClassC-P2	2013-04-26	-5.88	-0.84	2.19	0.76	1.80
비교지수	2013-04-26	-4.82	-0.41	2.16	0.66	1.89
수익률 변동성(%)	2013-04-26	3.85	3.36	3.38	3.81	2.62

주1) 비교지수 : (0.9 * [KOBI Market]) + (0.1 * [MMI_CALL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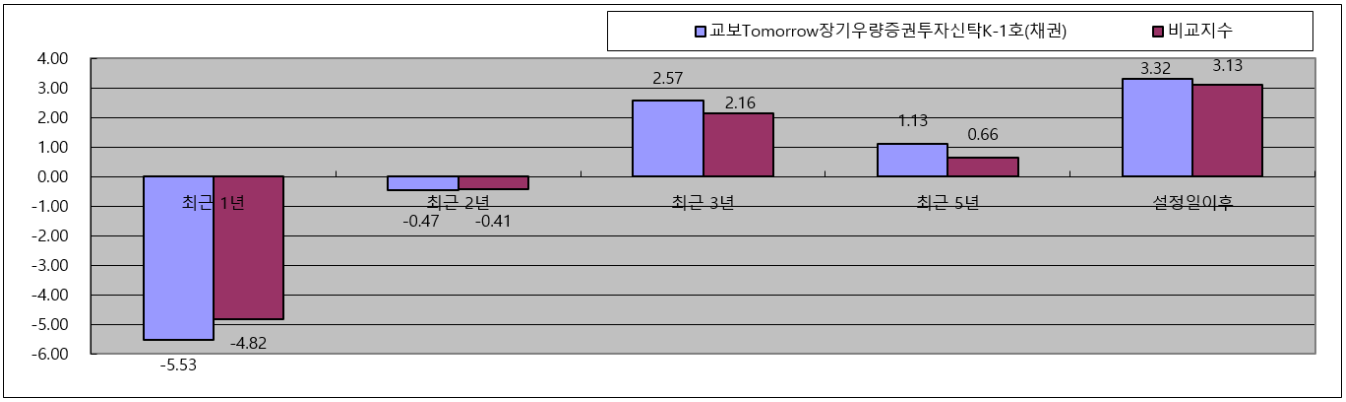
* 2016년 8월 10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BI Market Index * 100%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상기외의 Class는 설정전으로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5/09/05 ~ 2026/09/04	2024/09/05 ~ 2025/09/04	2023/09/05 ~ 2024/09/04	2022/09/05 ~ 2023/09/04	2021/09/05 ~ 2022/09/04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	2006-09-05	-5.53	4.85	8.95	4.35	-6.05
비교지수	2006-09-05	-4.82	4.21	7.52	3.76	-6.58
ClassA	2006-09-05	-5.64	4.72	8.82	4.23	-6.17
비교지수	2006-09-05	-4.82	4.21	7.52	3.76	-6.58
ClassC1	2006-09-05	-5.93	4.41	8.50	3.92	-6.45
비교지수	2006-09-05	-4.82	4.21	7.52	3.76	-6.58
ClassC2	2010-04-12	-5.83	4.22	4.59	5.62	-6.36
비교지수	2010-04-12	-4.82	3.67	3.62	3.76	-6.58
ClassCF	2013-04-29	-5.69	4.67	8.77	-0.02	-
비교지수	2013-04-29	-4.82	4.21	7.52	0.30	-
ClassCP	2012-01-02	-5.83	4.51	8.61	4.02	-6.36
비교지수	2012-01-02	-4.82	4.21	7.52	3.76	-6.58
ClassCW	2011-07-14	-5.64	4.72	8.82	4.23	-6.17
비교지수	2011-07-14	-4.82	4.21	7.52	3.76	-6.58

ClassAi	2012-02-10	-	1.69	8.79	4.20	-5.01
비교지수	2012-02-10	-	1.84	7.52	3.76	-5.25
ClassA2	2014-10-21	-5.83	4.51	8.61	4.02	-6.36
비교지수	2014-10-21	-4.82	4.21	7.52	3.76	-6.58
ClassCE	2014-10-29	-5.78	4.56	8.66	4.07	-6.31
비교지수	2014-10-29	-4.82	4.21	7.52	3.76	-6.58
ClassS	2014-10-30	-5.73	4.63	8.72	4.12	-6.26
비교지수	2014-10-30	-4.82	4.21	7.52	3.76	-6.58
ClassS-P	2015-10-27	-5.72	4.64	8.74	4.14	-6.25
비교지수	2015-10-27	-4.82	4.21	7.52	3.76	-6.58
ClassAe	2016-09-13	-5.74	4.62	8.72	4.12	-6.26
비교지수	2016-09-13	-4.82	4.21	7.52	3.76	-6.58
ClassC-Pe	2017-08-17	-5.74	4.62	8.72	4.12	-6.26
비교지수	2017-08-17	-4.82	4.21	7.52	3.76	-6.58
ClassC-P2e	2017-11-20	-5.76	4.60	8.69	4.10	-6.28
비교지수	2017-11-20	-4.82	4.21	7.52	3.76	-6.58
ClassC-P2	2013-04-26	-5.88	4.46	8.56	3.97	-6.41
비교지수	2013-04-26	-4.82	4.21	7.52	3.76	-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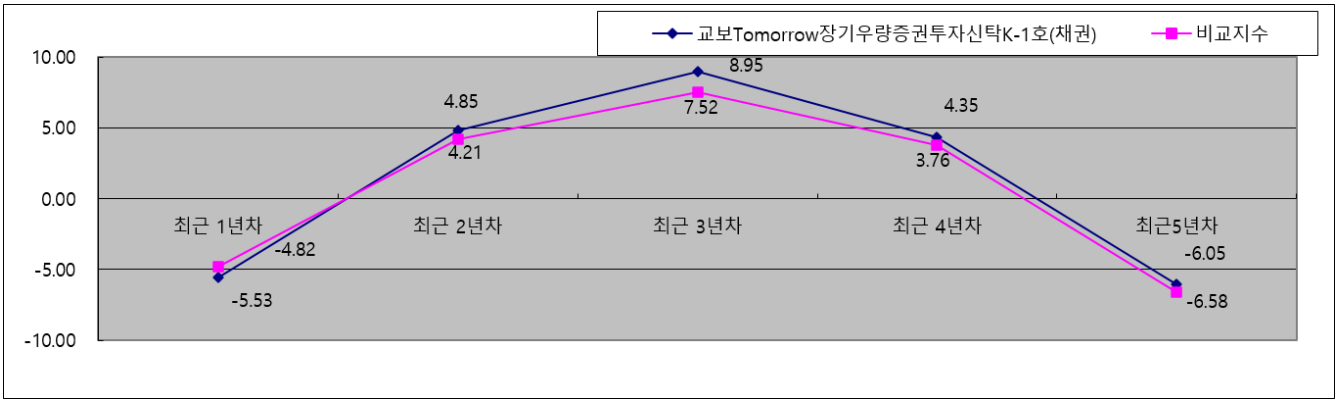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0.9 * [KOBI Market]) + (0.1 * [MMI_CALL지수])

* 2016년 8월 10일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OBI Market Index * 100%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클래스는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4) 상기외의 클래스는 설정전으로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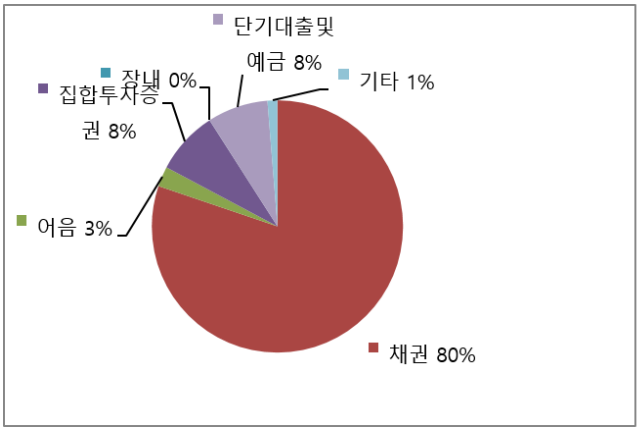
교보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호(채권)(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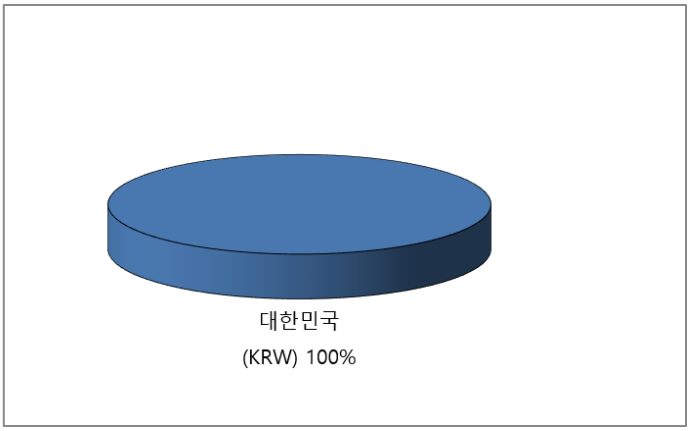
[2026.09.04 현재 /단위 : 백만,%]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KRW)	0	615,670	19,743	62,595	65	0	0	0	0	59,911	9,788	767,772
	(0.00)	(80.19)	(2.57)	(8.15)	(0.01)	(0.00)	(0.00)	(0.00)	(0.00)	(7.80)	(1.27)	(100.00)
자산합계	0	615,670	19,743	62,595	65	0	0	0	0	59,911	9,788	767,772
	(0.00)	(80.19)	(2.57)	(8.15)	(0.01)	(0.00)	(0.00)	(0.00)	(0.00)	(7.80)	(1.2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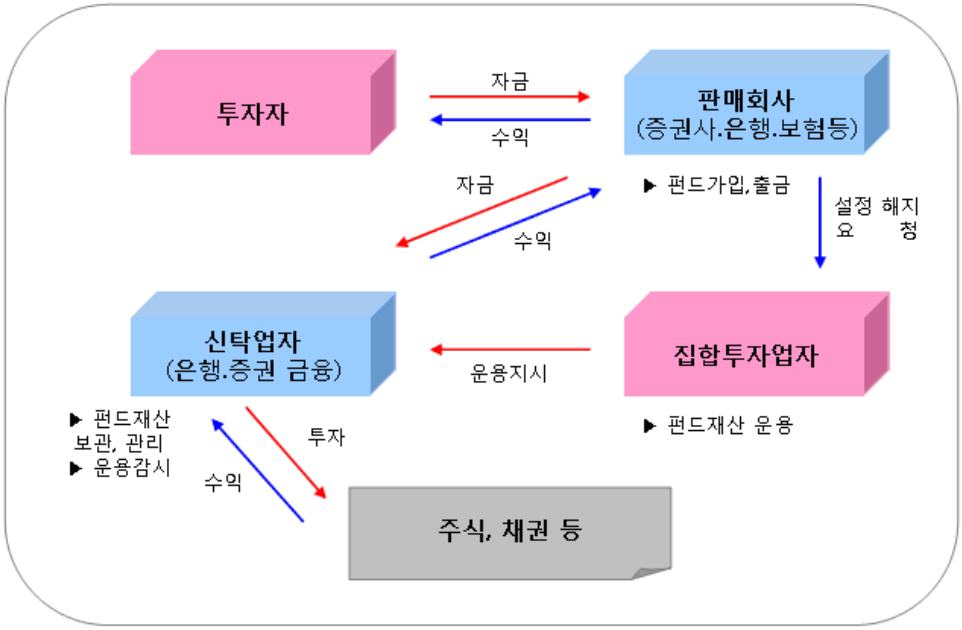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원차트 비중은 절대값 기준으로 표시


단기대출및
예금 8%
기타 1%
장내 0%
집합투자증
권 8%
어음 3%
채권 80%


대한민국
(KRW) 100%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교보자산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02) 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m.com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 → 교보악사자산운용) 2026.09.22 사명변경 (교보악사자산운용 → 교보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보험㈜ 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하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책임은 교보자산운용㈜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5.12.31**	**'24.12.31**	**항 목**	**'25.01.01~ '25.12.31**	**'24.01.01~ '24.12.31**
현금 및 예치금	602	557	영업수익	479	433
유가증권	36	54	영업비용	273	259
대출채권	1	3	영업이익	207	174
유형자산	33	49	영업외수익	1	0
기타자산	141	132	영업외비용	0	0
자산총계	813	795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207	174
예수부채	0	0			
기타부채	127	129	당기순이익	158	141
기타부채	127	129			
자본금	300	300			
자본잉여금	0	0			
이익잉여금	386	36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자본총계	686	666			
부채 및 자본총계	813	795			

라. 운용자산규모 (2026.09.04기준/단위:억원/투자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1,095	59,729	4,256	0	5,775	16,514	0	295	12,509	699	122,930	233,80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 (02) 2008-5000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1) 최초설정일부터 2021 년 2 월 1 일까지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aitas.co.kr

(2) 2021 년 2 월 2 일부터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 : 02-6714-46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i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5월 설립 (www.koreabp.com)

회 사 명	NICE피앤아이㈜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 nicepni.com)

회 사 명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3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bond.co.kr)

회 사 명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11년 6월 설립 (www.fnpricing.com)

회 사 명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20년 6월 설립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수익자는 연기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

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 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②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

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②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 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경우에 한한다)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교보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채권	276,441
교보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파생상품	1,213,118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거래	1) 일반주식매매 -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2) Cyber주식매매 -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3) 일반채권 매매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 4) 신규 발행 채권 인수 -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 5) 외화표시채권 매매 -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주1)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 평가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